

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995년 2월 11일
산업·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2월 4일 삼척시장 제출
나. 회부일자 : 1995년 2월 4일
다. 상정일자 : 제2회 삼척시의회(임시회)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'95. 2. 11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교통관광과장 박무정)

가. 제안이유

- 주차장 확충과 관리·운영 및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 이의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,
 -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관리·운영되고 있는 노상·노외주차장 이용요금 및 위탁 수수료와 관리 위반 과징금

- 도로교통법 위반 주·정차위반 과태료, 견인료, 도로법의 주차를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료
-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 교부금
- 국·도비 보조금 및 기타법령에 의한 교통 관련 수입금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%의 예산액으로 하며,

○ 세출재원은,

- 공영주차장 설치·관리 및 운영비
- 주차장관리 수탁자관리 및 운영비 보조
- 노외주차장 설치자 설치 비용보조 및 웅자
- 불법 주·정차 단속 비용으로 하고,

○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

○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문순기)

- 본 조례안의 세입재원의 조달방법과 세출재원으로 사용할 경비를 명시한 각항목들은 주차장법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주차장확충과 관리·운영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필요한 사항등을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으며,

- 앞으로, 행정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주차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차위반 과징금을 주민 계도 차원에서 요율을 하향 조정할 용의는 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들에 대하여 충분히 계도하고 있으며, 주차면적 부족으로 조례에 의한 요율에 의거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법이 제정된지 오래 되었는데 지금와서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6명, 찬성 6명)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